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적의료비 산정방식을 동일한 질환 발생 의료비에 한정하여 합산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전체 질환 발생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11조 제3항)

- 1) ‘동일한 질환의 치료 및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 등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일부 조문 개정을 통해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2) ‘질환별’에 한정된 문구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1회의”를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을 “발생한 외래진료 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내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원진료·외래진료 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을 “이내에 발생한 입원 및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회의 입원진료, 동일한 질환, 일련의 치료과정의 범위,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를 “재난적의료비”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질환별 입원진료”를 “입원진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생 략)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 ----- -----.
1. <u>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 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 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 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이하 이 항에서 “의 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u>	1. <u>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 에 발생한 -----</u> ----- ----- -----
2. <u>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에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 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 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u>	2. ----- -- <u>발생한 외래진료 비용</u> --- ----- ----- -----
3. <u>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 료 이전 1년 이내의 입원진료 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입원진료·외래진료 비용 및 각각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u>	3. ----- ----- <u>이내에 발생한 입 원 및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 료 과정</u>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1회의 입원진료, 동일한 질환, 일련의 치료과정의 범위,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11조(지원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1. <u>질환별 입원진료</u>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 (생략)	③ ----- ----- <u>재난적의료비</u> ----- ----- ----- ----- -----. 제11조(지원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u>입원진료</u> ----- ----- ----- ----- 2. (현행과 같음)
--	---